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4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미선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 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,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# 2. 주요골자

-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관련 규정 및 별표 18 삭제  
(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 18)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5년 11월 19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18132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34
  - 전자메일 : jw3788@korea.kr

오산시 조례 제 호

##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 및 별표 18을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